



저개발국의 지재권 보호제도 관련 논의



1. UN은 제3차 저개발국회의(LDC-3)에서 저개발국의 지재권 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는 바 지재권 관련 회의의 주요 발표사항을 아래 기술함

가. WIPO(세계 지적재산권기구)

- 저개발국들의 지재권 제도의 도약을 위해서는 비전과 자원(resources)을 가진 특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WIPO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함. 한 예로서 WIPO는 WIPO Worldwide Academy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는 저개발국에서 지재권 교육을 장려하도록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며, 원거리 교육과 지재권 관련 부서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켜움.
- 지재권에 관한 세계적인 정보망인 WIPO Net과 관련, 저개발국에게 전자자료 교환 서비스를 포함 지재권행정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음.
- 저개발국들로 하여금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집단관리 할 수 있는 협회(collective management societies)를 신설하고, 각 국가간 협회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관련 정보(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재권 관리 등)를 공유하는 전략을 마련함.
- 지재권 제도에 의해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보유자의 창조성(creativity)과 기술혁신(innovation)의 보호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임.

- 금년 2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저개발국과 기술혁신 및 지재권 관련 회의에서 채택된 “리스본 선언”의 우선순위(기술의 획득과 지식의 전달, 지재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협회의 설립, 전통 지식 등의 보호문제)를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WIPO 측은 상기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힘.

나. EU 집행위

- 리스본 선언은 저개발국과 그들의 동반자간에 미래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WIPO가 밝힌 가능한 방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EU 관련 기구들은 저개발국의 요구를 잘 받아주고 있으며, 집행위는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지재권조약의 이행을 위한 regional framework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 그밖에 지재권과 의약품의 접근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함.

다. OAU(아프리카 통일기구)

- 저개발국의 인력 훈련 등 저개발국의 개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WIPO 프로그램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특허정보망인 WIPONet도 저개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라. 기 타



- 지재권 분야에서 많은 국가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되지만 저개발국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움을 호소
- 저개발국에서 작가와 미술가 등에 대한 적

절한 로열티가 지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집단 관리(collective management)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지적재산권 집중단속, 불법복제물 '분골쇄신'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밀수 및 불법복제물(CD,VCD 등) 공개 소각이 있었다.

15대의 대형 분쇄기가 작동되면서 1,640만장의 불법복제물이 가루로 변하며 소각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밀수·불법복제 활동이 매우 심각해 출판물 시장 전반에 걸쳐 형성된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소각된 밀수 불법복제물은 대부분이 올해 몇몇 세관에서 압수한 것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1998~2000년 압수된 불법복제CD는 모두 5,400만장이고, 올해 1월~8월에는 2,990만장이 압수되었는데, 그 중 만장 이상의 밀수 사건이 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이래 이번 소각활동의 진행은 중국정부가 '과학교육진흥국가' 라는 전략과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차원에서 밀수품을 확실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베이징의 경우, 불법복제물 판매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주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상품도매시장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 육교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국내외의 불법판매업자들은 짧은 기간 안에 거액의 이윤을 남기며 계속해서 불법으로 밀수·생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밀수·불법복제 제품이 음악 및 영화관련 CD, VCD만이 아니라 도서출판업계까지 뻗어 있어, 그 피해사태가 늘고 있다. 각 출판업계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밀수 불법복제물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중국학생들을 비롯해 중국주재 외국인 및 유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아, 불법복제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 당 중앙과 국무원은 밀수·불법복제품 제조 생산라인을 신고시, 신고자에게 최고 30만위안(한화 약 5,000만원)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활동은 사회악을 조장하고 국가적 경제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중국정부의 대응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유지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 특히 서방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처 중국경제신문

WIPO-특허청, 中企 지재권 지원 등 협정체결



제36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 참석중인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카밀 이드리스 WIPO사무총장과 단독회담을 갖고 중소기업 지재권지원 등 8개 분야에 걸친 상호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임 청장과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선진화된 한국특허청의 지재권정책사례를 WIPO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모델로 설정하고 이를 대(對)개도국기술이전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해나기로 했다.

양측이 구체적 협력사업 분야로 정한 8개 분야는 중소기업 지재권 지원을 비롯해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전통 지식·유전자원·민간전승(Folklore),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특허협력조약(PCT), 지재권 집행, 지재권 교육연수, 저작권 공동관리 등이다.

양측은 특히 지재권 정보화사업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WIPO는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시작한 '한국의 지재권 제도가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중반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재권 교육연수 분야와 관련, 임 청장과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지난 87년에 설립한 국제특허연수원을 WIPO의 지재권연수센터로 지정,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을 위한 국제연수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국제특허연수원과 WIPO 산하 세계지재권아카데미(WWA)간의 업무협력협정을 별도로 체결키로 했다. 특허청과 WIPO는 이날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협력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총회가 끝나는 10월초에 양측의 전문가들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업무협력협정 초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 임 청장과 회담을 갖고 업무협력협정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WIPO와 특허청의 업무협력 협정은 한국이 세계최초로 인터넷 기반출원시스템을 개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지재권 정보화 분야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특허행정전산화 사업 등 특허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데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유럽사법재판소, 생명공학 특허 "허용"



유럽사법재판소는 산업에 응용되는 생명 형태에 특허를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유럽연합(EU)

규정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법재판소는 이날 식물이나 동물 또는 인체와 관련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1998년 EU 지침에 이의를 제기한 네덜란드의 소송을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 지침은 15개 EU 회원국들에 대해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생물공학 발명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특허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아 있는 유기체의 유전자 조작에 전통적으로 반대해 온 네덜란드 정부는 이 지침을 무효화하도록 추구하면서 유전자 배열과 같은 인체 각 부위에 대한 특허 부여는 인간 존엄성과 고결성에 대한 근

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EU 법률은 인체가 특허를 위해 이용될 수 없으며 인간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충분히 엄중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법재판소는 또 인간 복제나 인간의 유전적 특성 조작 또는 산업용이나 상업용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과정은 명백히 금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공동체 특허제도 추진동향



1. EU는 5.31 역내시장 각료이사회를 개최하고, 연호 공동체 특허 규정안에 관한 12차례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와 4차례의 상주대표자 회의(COREPER)에서 제기된 견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특허 규정안의 전반적인 골격에 관한 지침(guideline)을 마련하고, COREPER로 하여금 공동체 특허 규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바, 합의된 지침 내용 아래 기술함.

가. EU의 유럽 특허조약 가입

- 공동체 특허의 허여(grant)와 행정의 중심 역할은 유럽 특허청(EPO)이 담당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EU의 유럽 특허조약(EPC) 가입을 위한 EPC 개정작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 의장국으로 하여금 오는

6.25-29간 개최 예정인 EPC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에 상기 의제가 포함되도록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위임함.

나. 각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 각 회원국 특허청은 공동체 특허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체 특허출원에 관련 상담 지도, 공동체 특허 출원의 접수 및 EPO 송달, 공동체 특허관련 정보의 전달을 예시하고 있음.
- 각 회원국 특허청이 원하면서 공동체 특허를 다룰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자국의 언어(EU 공식 언어중 하나이어야 함)를 사용, 검색과 같은 심사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되(최종적인 특허허여는 EPO가 담당), 이 경우 각국 특허청에 위

입될 업무의 성격과 업무의 양에 대한 문제는 공동체 특허의 질(quality)과 균일성(uniformity)에 대한 보증의 필요성과 출원인의 요구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함.

다. 공동체 특허 출원비용과 사용 언어 문제

- 출원비용에 관해서는 경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며, 갱신 수수료는 현행 유럽특허의 평균 갱신 수수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함.
- 사용 언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차별금지 원칙 등 일반적인 원칙의 적용만을 발표함. 기타 번역비용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번역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함.

라. 수익금의 배분

- 공동체 특허의 갱신을 위한 연차수수료의 일부를 각 회원국 특허청에 분배하는 문제를 EPO와 협의하되, 분배의 규모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에 따라 각 회원국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함.

마. 사법 관할문제

- 공동체 특허의 사법 관할 문제는 NICE 회의에서 채택된 EC 조약 제 225조 a와 229조 a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함.
- 이에 따라 제1심은 공동체법의 적용과 비용효과 및 자국 언어사용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국내법원(national court)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유럽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이 담당하는 것으로 함.

2. 평가 및 분석

- 상기와 같이 금번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공동체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 특허청의 역학과 사법관할 및 EU의 EPC 가입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였으며, COREPER로 하여금 우선 순위를 두고 작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공동체 특허제도의 추진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공동체 특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용 언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바, 이는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부터 반대가 있으며, 이중 라틴아메리카들의 특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스페인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차기 EU 의장국인 벨기에의 역할과 COREPER의 향후 조정 작업의 결과가 주목됨.

발특2001/11

